단순고권행정

개념

- 공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형식으로 권력 적인 형식 이외의 행위형식
 - 고권적 공법상의 작용
 - 단순 비권력적
 - 권력적인 행정작용도 아니고 사법적 행정작용에 속하지 않는 상이한 행위유형의 집합

■ 종류

행정법상 의사표시/ 사실행위/ 비정식적 행정작용

<u>행정법상 의사표시</u>/ 사실행위/ 비정식적 행정작용

• 특정한 법적 효과에 향해진 행정법 상 의사표현

•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때 법률에서 정한 효과 발생

• 사실행위가 아님

행정법상 의사표시/ **사실행위**/ 비정식적 행정작용

- '사실상의 효과'를 지향하는 모든 행정작용
 - 폐기물수거, 행정지도, 대집행의 실행, (불법건축물의 철거), 행정
 상 즉시강제
 -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법률효과
 가 부여된 행위
 - 위법한 사실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
 상의무를 발생시킴
 -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에 비하여 법적 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의 양적인 면에서는 대부분이 사실행위

종류

- 물적 또는 법적 상황에 대한 단순한 지식 표명
-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이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체, 재산 등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전염병환자의 격리, 대집행의 실시) <-> 비권력적 사실행위(행정지도)
- 비명령적 영향력행사 경고
- 순수사실행위 순수히 사실적인 내용
- 내부적 사실행위 공문서 정리
- 외부적 사실행위 쓰레기수거, 도로건설
- 정신적 사실행위 행정지도, 통지, 보고

한계

- 법률의 우위, 법률의 유보
- 조직법상 주어진 범위 내
- 목적의 범위 내
- 행정법의 일반원칙

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

- 행정쟁송(항고쟁송)
 - 처분성의 인정여부 문제
 - 긍정설
 - 수인하명설
 - 부정설

■ 예방적 금지소송

■ 결과제거청구권

■ 처분성

- 항고쟁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법상 사실행위가 처분개념에 포함되어야 함(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견해 대립)
 - 긍정설 권력적 사실행위 및 사실상 강제력을 미치는 비권력적 사실행
 위는 그 자체가 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함
 - 이유: 현행 소송법은 사실행위에 대해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
 - 수인하명설 권력적 사실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결합되어 있는 행정행위
 인 수인하명(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측면)이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
 - 권력적 사실행위 = 사실행위 측면(집행행위) + 수인하명 요소 의 합성적 행위
 - 수인하명의 제거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, 수인하명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위법상태가 남아있으면 결과제거청구권행사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

- 부정설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
 - 권익구제는 당사자소송인 이행소송, 금지소송 또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봄
 - 문제- 판례 및 현행법은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
 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있는 권익구제
 가 어렵다
- 판례 단수처분, 교도소재소자의 이송조치의 처분성을인정한 판례가 있긴 함

예방적 금지소송

- 권력적 사실행위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취소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움 →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하자는 논의중
-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구제방 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분을 금지하는 소송 → 현행법상 인정 안됨

결과제거청구권

 위법한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해 위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,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적법한 상태로의 원상회 복을 위한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

그러나 아직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

행정법상 의사표시/ 사실행위/ **비정식적 행정작용**

의의

- 법적 성격이나 법적 효과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행정실제에
 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행정작용
- 협상, 조정, 협동, 타협, 화해 비공식적인 접촉, 묵인 등
-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행위로 분류

- 정식적 행정작용 - 절차, 형식, 효과 등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형식(행정입법, 공법상 계약, 행정행위 등)

필요성과 문제점

- 1) 협의에 의한 행정, 탄력적인 행정을 위해 요구됨 행정의 실효성과 실용성 도모
- 2) 의사소통을 통해 장차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
- 3) 반면에, 규율의 완화로 법치행정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음
- 4) 국민의 권익구제가 어려움(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곤란- 대부분 분 취소소송 내지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)
- 5)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위험성이 있다
- 허용성 법률에 반대규정이 없는 한 행정의 전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. 행정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행위형식이 요구되므로 조장되 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

한계 및 권익구제

한계

-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정한 한계는 가짐
- 법치행정의 원칙하에서 인정, 특히 일반원칙(비례, 평등, 부당결부금지 등)에 구속됨

■ 권익구제

-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행청구권을 가지지 못함
- 그러나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(이설있음)
- 위법, 과실의 경고, 정보제공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

행정지도

- 의의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진 바 없음
 - <u>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</u> 상대방인 국민에게 <u>임의적인 협</u>
 <u>력을</u>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
 - 행정절차법 "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
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, 권고,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" (제2조제3호)
 - <u>비정식적 행정작용의 일종</u>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
 은 아님
 - 권고, 설득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행위
 - 그러나 현실에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(행정지도 안 따르면 보조금지급 거부하거나 세무조사, 명단의 공표와 같은 불이익조 치를 취하는 경우)

개념구별

		행정지도
행정행위	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	사실행위
행정강제	강제적 사실행위	비권력적 행위
행정감독	상급행정기관→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,감독권의 발동	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 개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상 대방으로

필요성

- 행정기능의 효율성확보(법령불비의 보완) 입법이 불비되었거나 행정환경이 변화한 경우라도 행정주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 임이 있는데 이때 유용한 행위형식이 됨
- 상대방에 대하여 합의에 유사한 의미를 주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:
 상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임의적 수단, 공권력의 발동으로
 야기될 저항을 피할 수 있음
- 국민에게 정보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경제지식을 제공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을 유도(중소기업의 경영개선지도, 영농기술 지도)

문제점

- 사실상의 강제를 통한 법치주의의 붕괴 사실상 강제되기 쉽고,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위험이 있음
- 권익침해의 가능성 법적 근거도 없고, 자의적으로 발동될 수 있음
- 책임행정의 이탈 잘못된 지도, 위법한 경우라도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구제수단이 적절하지 못하다

종류

- 규제적 지도
 - 사적 활동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갖는 행정지도
 -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에 장애가 될 일정한 행위를
 예방, 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(물가의 억제 위한 행정지도)
- 조정적 지도
 - 이행관계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나친 경쟁의 조정을 내용으로(구조조정을 위한 행정지도)
 - 사인 상호간 이해대립의 조정이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 (노사간의 쟁의지도)
- 조성적 지도
 - 국민이나 기업활동이 일정한 방향으로 행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보, 기술 제공(영농지도, 생활개선지도)

법적 근거!

- 법적 근거 불요설 (다수설, 판례) →
 -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의 임의적 결정
 에 달려 있으므로 근거 불요
 - 행정지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
- 제한적 법적 근거필요설
 -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 거를 필요로

•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 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 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<u>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</u> <u>, 권유,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</u> <u>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</u> <u>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.</u> (대법원 1993.10.26. 선고 93누6331 판결【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 취소】 [공1993.12.15.(958),3192])

한계

- 행정지도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자의적인 행정지도를 억제할 필요성
 이 강하게 요구됨
 - 작용법상 한계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행정지도 가능(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)
 -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(과잉금지-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 그쳐야 함)
 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
 -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조 치금지

- 절차법상의 한계 (행정절차법에 의해)
 - 실명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·내용 및 신분을 밝혀 야 한다.
 - 서면교부청구권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 - 의견제출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·내용등에 관하여 행정 기관에 의견제출 가능
 -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함

권리보호(행정구제)

- 항고쟁송에 의한 구제!
 - 부정설: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정행위, 그 자체로는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x
 -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임의로 결정
 - 그러나 이 견해도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부담적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
 - 제한적 긍정설 : 예외적으로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"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"으로 보아 인정
 - 비판 굳이 취소소송으로 다투지 않아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손해 전보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무리하게 행정지도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쟁송의 성질을 불명확하게 함
 - 판례 처분성 부인/ 헌재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에 해당될수 있다 봄
 - 행정지도도 그 한계를 넘으면 위법함

손해배상

- ① 행정지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?
- ② 행정지도의 위법성
- ③ 행정지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
 -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충족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
 - 즉,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공행정작용이면 권력행위뿐만 아니라 비권력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

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

"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 를 加하거나…"

- 1. 공무원 공무를 위탁 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
- 2.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
- 3. 고의, 과실
- 4. 위법성
- 5. 타인
- 6. 손해의 발생

-위법성과 과실

- 위법성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작용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으나, 규제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수 있다
- 비단, 작용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가 통상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이 경우 과 실도 인정함

• 인과관계

- 통상 행정지도는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
 - 또, 임의적인 동의라고 보는 경우에는 '동의는 불법행위성립을 조각시킨다'는 논리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을 조각시킨다고 볼 수도 있으나,
 - 행정지도에 동의한 것은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것이
 아니므로, 통상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
 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함
- 판례의 태도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손해발 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 →

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 상의 근거도 없이 특정 서적에 허위의 사실이 수록되어 있어 유포될 경우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판 업자나 시중서점에 위 서적 을 판매하지 말 것을 종용한 행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 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출판업자 또는 시중서점에 대하 여 <u>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데 불과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</u> <u>고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어 출판업자의 권리행사에 영향</u> 을 미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.(서울고법 1990.4. 6. 선고 89나4357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【손해배상(기)

[하집1990(1),109])

손실보상

예) 정부의 통일벼 재배장려로 농민이 입은 손실의 보상여부?

-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손실보상 인정 X
- 강제성 O,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 능할 것